

구매기본조건

1. 정의 및 계약의 형식

1.1 본 조건에서:

“EDWARDS”란 구매주문 상에 지명된 Edwards 실체를 의미한다.

“Edwards 자산(Edwards Property)”이란 Edwards 소유의 또는 Edwards 가 책임을 지는 자재, 장비, 공구 또는 기타 자산을 의미한다.

“본 조건(Conditions)”이란 본 구매기본조건 상에 명시된 조건을 의미한다.

“본 계약(Contract)”이란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를 위한 구매주문 및 본 조건 상에 명시된 본건 제품 및/또는 서비스 의 Edwards 에 대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 구매주문의 조건과 본 조건이 상이한 경우, 구매주문이 우선한다.

“본건 제품(Goods)”이란 구매주문 상에 명시된 제품을 의미한다.

“구매주문(Purchase Order)”이란 본 조건이 첨부되며 공급자에 대해 Edwards 가 발행하는 Edwards 의 공식 구매주문으로 본 조건 및 그에 대한 도안, 부속서, 명세서 및 기타 첨부물을 포함한다.

“본건 서비스(Services)”란 구매주문에 명시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명세서(Specification)”란 구매주문상에 명시되거나 참조된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명세서를 의미한다.

“공급자(Supplier)”란 구매주문 수신 회사 또는 인을 의미한다.

1.2 계약은 공급자에 의한 구매주문의 수용 시 성립된다.

1.3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급자에 의한 구매주문 및 본 조건의 최종적인 수용을 구성한다; 서면(전자 문서 포함) 또는 구두 수용 또는 본건 제품의 공급이나 본건 서비스의 이행의 개시.

1.4 본 조건은 Edwards 에게 부여된 견적의 조건이나 공급자에 의해 수용된 또는 수용되는 구매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기타 조건을 제외하고 계약에 적용된다.

2. 본건 제품의 검사, 인도 및 이행

2.1 공급자는 Edwards 에게 공급자의 부지 등지에서 제품 인도 전 언제든지 본건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다. 공급자는 Edwards 에 완성된 본건 제품의 검사 준비 완료 시기를 합리적으로 사전 통지한다. Edwards 에 의한 본건 제품의 검사는 공급자를 본건 제품에 대한 책임이나 책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않으며 그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Edwards 는 인도 후 본건 제품을 거절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인도 전 검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2 공급자는 (i) 구매주문 상에 명시된 가격 및 인도 일정 및 (ii) 구매주문에 명시된 현장에서의 Incoterms 2010 에 의한 DDP 인도조건 및(iii) 계약에 따라 본건 제품을 인도한다.

2.3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제품 인도 관련 문서가 모든 본건 제품에 포함된다: 구매주문 번호, 해당 제품의 설명 및 공급자명, 용량을 명시하는 측정 단위, 수량 및 해당 제품의 인도 지점.

2.4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은 (i) 그 제품 또는 서비스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대금 지급일 또는 (ii)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일 중 빠른 날에 Edwards 로 양도된다. 본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이 Edwards 에게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여전히 공급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는 제품이 Edwards 자산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제품을 다른 제품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2.5 Edwards 는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인도된 본건 제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Edwards 가 인도 후 또는 본건 제품 상의 잠재적 결함이 명백해진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질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dwards 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6 계약 등에 의해 Edwards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본건 제품을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도하지 못하거나 Edwards 가 제 2.5 조에 의하여 본건 제품을 거절하는 경우, Edwards 는 자신의 선택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6.1 공급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급자의 비용으로 인도되지 않은 또는 거절된 제품을 제거,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은 그 후 즉시 공급자의 위험부담 하에 보유된다.

2.6.2 제 3 자로부터 교체 가능 제품을 득하고 모든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를 요청에 의해 공급자로부터 변제 받는다.

2.6.3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계약에 의한 본건 제품의 추가적 탁송(consignment)의 수용을 거부한다.

2.6.4 계약을 중단하고 공급자로부터의 본건 제품의 추가 인도 분의 수용을 거부한다.



- 2.7 공급자는 Edwards 가 수시로 발행하는 모든 포장 관련 명세서를 준수하며 공급자가 공급하는 포장재의 대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Edwards 의 요청 시 Edwards 로부터 무상으로 수거되어야 한다.
- 2.8 Edwards 는 원자재의 증명서를 요청하고 본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장비의 증명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3. 본건 서비스의 이행

- 3.1 계약 등에 의해 Edwards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특정 일자까지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Edwards 가 본건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 Edwards 는 자신의 선택으로 다음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1.1 공급자로 하여금 자사의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건 서비스를 재이행하도록 한다.
 - 3.1.2 제 3 자로부터 서비스를 득하고 모든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를 공급자로부터 변제 받는다.
 - 3.1.3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계약에 의한 본건 서비스의 추가 이행 수용을 거부한다.
- 3.2 공급자의 직원이 Edwards 의 용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3.2.1 사용되는 자재는 Edwards 의 수용 시까지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있다.
 - 3.2.2 공급자는 자신 소유의 또는 자신이 통제하는 공장, 장비, 공구 및 문서를 제한 없이 포함하는 자산 일체의 보관에 책임을 지며 동 자산이 적절하게 유지되며 정상적인 작동 상태 및 수리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필요한 증명서와 기록을 수반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동 자산 일체를 인적 부상, 손실 또는 사망이나 자산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 및 보관되도록 본건 서비스를 이행한다.
 - 3.2.3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건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인력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적절한 모든 안전 장치와 방호복을 제공받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Edwards 의 서면 동의 없이 Edwards 소유의 또는 Edwards 가 관리하는 공구, 장비 또는 기타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공급자가 동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사용 및 안전유지에 책임을 진다.
 - 3.2.4 공급자는 Edwards 의 부지에서 그 세부사항이 제공되는 Edwards 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며 부지 내에서의 작업의 개시 전에 Edwards 의 작업허가가 반드시 취득되어야 한다. 특히 “금연” 요건 및 기타 위험표지와 같은 부지 내 안전 규칙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직원들은 Edwards 가 요구할 수 있는 안전 교육에 참석한다.
 - 3.2.5 Edwards 는 어떠한 사유도 없이 Edwards 용지 내에서 작업하는 개인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3.2.6 공급자는 Edwards 의 요청 시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자에 의한 작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필요한 자재를 제거하고 부지를 항상 Edwards 에 만족스럽게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이러한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급자는 환경 및 폐기물 처리 법규를 포함하는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신이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제대상 및 특별 폐기물을 수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 및 등록을 득하였음을 보증한다.

4. 대금 및 지급

- 4.1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대금은 구매주문 상에 명시되며 계약 기간 중 고정된다.
- 4.2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은:
 - 4.2.1 부가가치세(VAT 인보이스 수령을 조건으로 Edward 에 의해 지급됨) 또는 기타 판매세를 제외하고
 - 4.2.2 본건 제품의 포장, 선적, 운반, 보험 및 인도 비용 일체 및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시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는 모든 관세, 사용료, 허가 및 조세(VAT 제외)를 포함한다.
- 4.3 Edwards 는 해당 제품의 Edwards 에 대한 인도 후 또는 해당 서비스 후에만 공급자에 의해 발행되는 공급자의 적법하게 완료된 정확한 인보이스(정식 구매주문 번호 포함)을 수령한 날로부터 60 영업일 이내에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 4.4 Edwards 는 다투어지거나 문서에 의해 충분하게 증명되지 못한 인보이스 상에 포함된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Edwards 는 공급자에 의해 Edwards 에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으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EDWARDS 자산

공급자는 공급자가 Edwards 의 자산을 보유하는 중 Edwards 자산의 안전하고 안정된 보관을 포함하는 Edwards 자산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유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며 공급자에 의해 손실 또는 손상된 Edwards 자산을 Edwards 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한다. 공급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관련 Edwards 자산 일체를 Edwards 의 상호 및/또는 로고를 날인, 부착 또는 달리 표시하여 Edwards 의 소유임을 표시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소유권 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Edwards 자산을 공급자의 용지 내에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 보관하는 것에 합의한다. 공급자는 동 자산을 요청 시 즉시 반환하며 Edwards 의 직원이 Edwards 자산의 이동을 위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보증 및 개런티

- 6.1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그 부품 또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재가 다음과 같음을 보증한다.
 - 6.1.1 명세서와 부합한다.
 - 6.1.2 해당 목적 또는 Edwards 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특별 목적에 적합하다.
 - 6.1.3 새것이며 사용된 적이 없고 양호한 자재와 숙련된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만족스러운 품질의 것이며 어떠한 결함(잠재적 결함 등)도 없다.
 - 6.1.4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서비스(서비스의 이행에서 사용된 모든 부품 또는 자재 포함)와 관련한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
 - 6.1.5 본건 제품 또는 부품이나 자재의 사용, 보관, 운영, 수송 및 처리와 관련한 모든 적절한 정보, 경고, 지시사항 및 문서가 첨부되었다.
 - 6.1.6 관련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되었다.
 - 6.1.7 REACH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의 일부로 공표된 고위험물질 후보목록에 포함된 어떠한 물질도 중량의 0.1%를 초과하여 함유하지 아니한다.
- 6.2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의 이행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자재에 추가로 및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는 다음을 행한다.
 - 6.2.1 모든 직면한 및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이나 위협 물질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유독성, 인화성, 흡입이나 직접 접촉 및 직접 또는 간접적 사용으로 인한 위해 작용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 6.2.2 이행되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안전 수칙과 관련한 세부사항(그 사용이나 처리 관련 사항 포함)을 제공한다.
 - 6.2.3 해당 제품을 처리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독성 또는 달리 위해한 제품을 보관하는 모든 용기에 적절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도록 라벨을 부착시킨다.
 - 6.2.4 본건 제품의 공급이나 본건 서비스 공급 관련 자재의 사용 전에 Edwards 에 오존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제작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나 자재에 대하여 통지한다.
- 6.3 공급자는 모든 서비스(설계 작업을 제한 없이 포함함)가 (i) 안전하고 숙련된 방법으로 최상의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공급자 업계에서 숙련되고 노련한 계약자에 의해 행하여지는 고도의 기술과 주의로 (ii) 모든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 정보, 경고사항에 따라 이행되어 (iii) 본건 서비스의 목적물인 완성된 작업이 자재 및 기술 상의 어떠한 결함도 없으며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보증한다.
- 6.4 계약 등에 의해 Edwards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Edwards 의 선택으로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고 본 제 6 조에 명시된 보증의 위반에 기인한 Edwards 에 대한 결함, 불이행 또는 기타 손실을 본건 제품의 수령일 또는 본건 서비스 이행 완료일 12 월 이내에 배상한다.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공급자에 의한 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결함의 성격을 고려하여), Edwards 는 공급자의 위험 하에 공급자의 비용으로 작업을 진행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작업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 6.5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Edwards 의 재량에 따라 본 제 6 조에 의해 수리, 변경 또는 교체된 부품이나 자재를 동 수리, 변경 또는 교체의 수령일로부터 12 월의 기간 이내에 다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체 또는 수리한다.
- 6.6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Edwards 가 권리를 가지는 보증이나 개런티 혜택의 후속 사용자 또는 구매자에 대한 이전이나 양도에 합의하며 공급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문서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한다.
- 6.7 공급자는 본 계약의 체결에서 모든 수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담보한다.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서비스가 그 인도시에 어떠한 수출 관련 규제의 제약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인도될 것이라는 점, 본 계약에 따른 인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가, 허가 또는 증명서가 획득될 것이라는 점을 담보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수출 관련 규제도 불가항력을 구성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본건 제품 및 서비스의



재수출을 고려하여, 공급자는 Edwards 를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판매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된 본건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국 서면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6.8 공급자는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의 이사회의 2011/65/EU 지침(유해물질의 제한 또는 “RoHS” 지침)을 준수하는 제품을 Edwards 가 사용하기 위해 구성요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Edwards 의 요청에 따라 적절히 그와 같은 준수의 문서 또는 증거를 제공하고, 준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Edwards 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7. 면책 및 보험

- 7.1 공급자는 (i) 본건 제품이나 본건 서비스의 설계(Edwards 에 의한 또는 Edwards 가 제공한 설계 제외), 부품 또는 자재나 기술 상의 결함 또는 공급자에 의한 계약의 위반(본건 제품의 인도 및/또는 본건 서비스 이행 상의 지연 포함) 또는 (ii) 공급자, 그 직원,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과실, 고의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발생한 채무, 손실, 비용(법률 수수료 포함), 경비, 손상, 사망 또는 상해로부터 Edwards 를 보호하고 면책한다. 단, 동 채무, 손실, 비용, 경비, 손상, 사망 또는 상해가 Edwards 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 7.2 공급자는 위 제 6 조 내의 보증의 위반이나 본건 제품 및 또는 본건 서비스의 품질 상의 결함에 의해 야기된 상해, 사망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한 제 3 자의 청구로 인하여 Edwards 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Edwards 의 결함 제품 수령으로 인하여 Edwards 에 발생하는 제품 리콜 비용 포함)로부터 Edwards 를 면책하는 것에 합의한다.
- 7.3 공급자는 Edwards 에게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8. 지적재산 및 기밀유지

- 8.1 공급자가 Edwards 를 위해 시행 또는 준비한 작업이나 Edwards 가 또는 Edwards 를 대리하여 공급되거나 Edwards 가 자금을 제공한 공구로부터 야기된 특허, 상표, 서비스표, 의장권(등록 여부 불문), 저작권(미래의 저작권 포함) 및 상술한 사항의 신청은 Edwards 의 소유로 하며 공급자는 Edwards 의 비용으로 (i) 동 권리를 Edwards 에게 양도하고 (ii) 달리 동 권리를 신청하고 허여 받기 위하여 Edwards 에 조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체결하고 모든 기타 행위를 이행한다.
- 8.2 Edwards 에 의해 또는 Edwards 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공급되거나 공급자에 의해 Edwards 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 제조 또는 조달되는 모든 제품과 자재(사진, 도안, 삽화, 원판, 양화(positive), 브로마이드, 레코드, 증거,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리적 구현, 공구/공구제공 및 금형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상의 자산은 Edwards 의 소유이며 Edwards 의 요청 시 즉시 무상으로 양호한 상태로 Edwards 에 이양되며 동 제품 또는 자재는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으며 Edwards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처분되지 않는다.
- 8.3 Edwards 에 의해 공급자에 제공되거나 달리 Edwards 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득한 또는 Edwards 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대리하여 생성 또는 조달된 모든 정보와 문서는 공급자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며 Edwards 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급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동 정보와 문서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지 않는다.
- 8.4 위 제 8.3 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사유를 불문한 해지 또는 완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지속한다.
- 8.5 위 제 8.3 조의 규정은 공유의 것이거나 공급자의 불이행을 통하지 않고 공유의 것이 되는 정보나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8.6 제 8.3 조 및 제 12.1 조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자가 계약의 어느 부분을 어느 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 공급자는 동 인이 계약의 당사자와 같이 본 제 8.1 조 내지 제 8.5 조(포함)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합의 하도록 하며 공급자는 자신이 이를 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동 인이 계약의 당사자였다면 청구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Edwards 를 면책한다.
- 8.7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또는 공급되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의 판매, 소유, 재판매 또는 사용이 특허, 의장(등록 여부 불문), 저작권,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 여부 불문)를 포함하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본 보증의 위반과 관련하여 Edwards, 그 직원, 임원, 사원, 대리인, 승계인, 양수인 및 고객(“피배상 당사자”)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피배상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모든 로열티나 사용료(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범위까지) 및 모든 손해, 비용, 손실 또는 경비로부터 피배상 당사자를 면책하고 보호하기로 한다. 공급자는 본건 제품 및 본건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에 대한 항변에 있어서 피배상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와 같은 모든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본 보증에 의한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Edwards 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 Edwards 는 어떠한 책임도 없이 서면 통지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다.

8.8 공급자는 Edwards 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자신의 광고, 인쇄물 또는 서신 상에 Edwards 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공급자에게 Edwards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Edwards 의 상호,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9. 특별 공구, 지그 또는 정작물

플레이트, 실린더 또는 공구가 명확하게 Edwards 를 위해 설계, 준비 또는 생산된 경우, 동 물품들은 기타 인(법인 등) 또는 법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며 Edwards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분해,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는다. Edwards 는 공급자로 하여금 동 물품을 Edwards 가 지명하는 제 3 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며 동 물품은 계약의 완료 또는 해지 시 Edwards 의 자산이 된다.

10. 해지

10.1 Edwards 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통지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공급자의 부지에 들어가 Edwards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0.1.1 공급자가 계약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계약 상의 보증을 위반한 경우.

10.1.2 공급자의 제품에 대해 압류나 강제집행이 내려지거나 공급자가 자신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명된 관재인, 관리인, 경영 관리인 또는 매니저를 두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채권자와 타협하거나 합의하거나 파산 행위를 행하거나 폐업 또는 청산하거나 공급자가 외국법에 의한 유사한 절차에 처하게 되는 경우.

10.2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전에 발생한 Edwards 또는 공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1. EDWARDS 행동강령 및 윤리적구매정책

11.1 공급자는 Edwards 가 기업윤리, 노동, 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하여 다루는 윤리규범(“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전자산업 시민연대의 행동규범(“EICC 강령”)을 채택하며, 윤리적 구매정책(“윤리적구매정책”)을 운용함을 인정한다. 윤리적구매정책 및 행동강령의 사본은 www.edwardsvacuum.com 에서 볼 수 있고, EICC 강령은 www.eicc.info에서 볼 수 있다.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를 Edwards 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는 행동강령, 윤리적구매정책 및 EICC 강령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 나아가, 어떠한 Edwards 의 직원이나 임원도 공급자에게 행동강령과 윤리적구매정책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제안하거나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11.2 공급자가 (또는 Edwards 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공급자가) 행동강령, EICC 강령 또는 윤리적구매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동 위반이 시정 가능한 경우, 공급자가 동 위반을 Edwards 의 동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후 Edwards 가 명시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Edwards 는 공급자와의 사업 관계 및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정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Edwards 는 위반의 정도와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11.3 공급자는,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2010) 및 미국의 외국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Act)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반 수뢰 및 반 부패에 관련된 모든 법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상호 존중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관련 요구사항”);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공급자의 근로자, 임원, 대표자, 하청업자 및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UK Bribery Act 2010 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여 공급자의 정책과 절차를 유지하고, 본 계약에 대한 협상과 체결에는 어떠한 종류의 중개인이 없음을 보증한다. 본 조항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Edwards 는 공급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1.4 공급자는, Edwards 에 공급하는 제품에 포함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이 콩고공화국 또는 인접국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인 무장단체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융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광물의 원천과 관리 경로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Edwards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실사자료료를 Edwards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 12.1 공급자는 Edwards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하도급 맡길 수 없다. Edwards 는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약 또는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 이전, 위탁 또는 달리 처리할 수 있다.
- 12.2 공급자는 Edwards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Edwards 로부터 받을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3 시간은 공급자에 의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이다.
- 12.4 계약의 어떠한 조건이나 규정도 제 3 자(당사자들 및 그들의 허용된 승계인과 양수인을 제외한 자)에 의해 시행될 수 없다.
- 12.5 Edwards 가 계약에 의한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하는 것이 당해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으며 계약에 의한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단일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하더라도 당해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 혹은 기타 다른 권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추가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Edwards 에 의한 어떠한 포기도 Edwards 가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 12.6 계약은 본건 제품 및/또는 본건 서비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Edwards 와 공급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Edwards 가 이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 12.7 모든 계약, 수락, 서신, 명세서 및 기타 문서는 국문으로 작성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 및 해석되고, Edwards 와 공급자는 본 조건에 의해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비전속적 관할권에 합의한다. Edwards 는 공급자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12.8 Edwards 는 언제든지 구매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한다.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취소나 변경을 제외하고, Edwards 는 공급자에게 변경 또는 해지 당시의 공급자의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한다. 단, 동 보상은 예상 수익의 손실이나 경제적 또는 파생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 12.9 계약의 어느 조건이나 규정이 관할지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계약의 나머지 규정들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유지한다.
- 12.10 본 조건 상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그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11 모든 법률, 규정 및 행동 지침에 대한 참조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변경 및 재제정본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